제93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방치농업기계의 강제처리(신설) ㅇ 무단 방치농업기계로 판단 될 경우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조치명령 · 매각 · 폐기를 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규정 –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서는 안되는 기간 : 2개월(분해·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15일) – ② 방치농업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 . 소유자 · 점유자 등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.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, 공고 기간(7일)이 만료 .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·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– ③ 방치농업기계 매각방법 .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함 . ▲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 또는 ▲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– ④ 방치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 . 직접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농업기계 . 분해·파손되어 정비·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 .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폐기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 ▶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입주자 모집 방법(강화) ○ 무순위 청약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지역을 비규제지역까지 확대하고, 위탁 횟수를 규정 – 위탁 횟수: 규제지역 3회, 비규제지역 1회 * 입주자 모집미달 또는 위탁 횟수 초과 시, 사업주체가 직접 주택공급 가능 ○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세대 수*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 * (현행)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 ▶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,제50조	1.중요
3	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요건(강화) ○ 권리자 불명 저작권 이용(법정허락) 신청요건의 하나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등에게 보내 확인받는 절차의 문서 회신 기한을 단축: 1달–>20일 ▶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	1.비중요
4	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재평가 결과 취소 요건 신설(신설) ○ 기능성 원료의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 내용을 취소하는 규정 신설 ▶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ㅇ 소화전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– (제3조) 최고사용압력 규정 – (제6조) 내압력 기준 강화 – (제8조) 옥외소화전의 밸브대강도시험 신설 – (제9조제2항제1호) 옥외소화전의 재질 강화 – (제9조제3항) 고무재료의 기준 강화 – (제10조) 염수분무시험 신설 – (제12조제13호) 핸들의 직경 규정 – (제14조제2항) 개폐핸들의 작동토크 규정 – (제16조제2항제8호) 옥외소화전의 캡 높이 규정 – (제16조제2항제9호) 옥외소화전의 쇠줄 지름 규정 – (제19조) 작동시험 신설 – (제20조) 작동토크시험 신설 – (제21조) 도막두께시험 신설 – (제22조) 도막충격시험 신설 ▶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, 제6조,제8조,제9조,제10조,제12조,제14조,제16조,제19조, 제20조,제21조,제22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행정처분 기준 신설(마약류 관련 범죄행위 장소 제공 등) (신설) ㅇ 일반음식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 영업자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·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(2.6)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- (1차) 영업정지 3개월 → (2차)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▶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	1.비중요
7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(경찰청)	1.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신설(신설) ㅇ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면허증은 본인 수령이 원칙임을 명시하고, - 예외적으로 ▵면허증 발급신청 시 본인 확인한 경우 ▵해외 체류 ▵질병 ▵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▵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 ▶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행정처분 종류 및 기준 마련(신설) ㅇ 법 시행규칙상 처분 종류·기간이 누락된 법 제106조④제9호, 제107조④제9호, 제113조①제12호에 대한 처분 종류 등의 기준을 명시 -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, 처분기준의 상·하한을 명시 ▶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,제129조 3.이륜차 교육 시 밀접교육 방식 적용(신설) ㅇ 이륜차 관련 면허의 1단계 기능교육을 '동승교육'에서 '밀접교육' 방식으로 변경하고, 강사 1명당 담당 교육생 숫자는 최대 5명으로 제한 ▶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난민법 개정안 (법무부)	1.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제한(강화) ㅇ "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"를 난민인정 제한사유에 추가 ▶난민법 제19조 2.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(강화) ㅇ 난민인정결정 취소 사유로 ‘법 제19조(난민인정의 제한)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’ 추가 ㅇ 난민인정결정 철회 사유로 ‘법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’ 추가 ▶난민법 제22조	1.중요 2.중요